

명의확인, 실명확인), 더 나아가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금융기관에게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의 발급을 위해, 「전자서명법」에서는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위해서 반드시 실명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자서명법」에서는 직접 대면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중 공인인증서의 최초 발급 시 대면확인 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나⁹⁾ 그 외 「금융실명법」 상 요청되는 실명확인 은 비대면확인¹⁰⁾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다. 본인확인 과 본인인증 의 정의

‘본인확인’은 특정한 방법을 통하여 특정인이 본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것을 말하고, ‘본인인증’이란 특정한 방법을 통하여 본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본인인증에는 주민등록증 인증방법(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과, 제3자의 인증¹¹⁾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본인확인 대상자와 본인확인자 간에 직접 대면을 통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과 비대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오늘날 ‘본인확인’이란 비대면 절차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한 본인확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나, 전자적 본인확인수

단은 반드시 비대면 절차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¹²⁾

라. 본인인증(본인확인수단)의 유형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방법은 통상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¹³⁾

- ① **지식기반 인증** : 본인확인 대상자가 알고 있는 특정사실을 기반으로 인증하는 방법으로 아이디(ID), 패스워드(PW), 아이핀 등이 대표적이며, 구현이 쉽고 가장 안전성이 낮다.
- ② **소유기반 인증(소지기반 인증)** : 본인확인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리적 개체를 기반으로 인증하는 방법으로 스마트카드, 본인토큰(HSM), OTP 등이 대표적이며 보안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 ③ **기기기반 인증** : 본인확인 대상자 고유의 기기를 사전 인증 방식을 통하여 인증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유심(USIM)을 이용하는 스마트인증이 대표적이며 보안 안정성이 매우 높다.
- ④ **특성기반(생체기반) 인증** : 본인확인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인증하는 방법으로 생체인증, 전자자필서명 등이 대표적이다. 개체의 특성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마. 본인 스스로의 증명 과 제3자의 인증

9) 전용준, 앞의 논문, 252면

10)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금융당국은 계좌개설 시에 한하여 금융기관이 인터넷, 영상통화, 업무제휴기관 등을 통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게 되었다(전용준, 앞의 논문, 246면 참고)

11) 「전자서명법」 제2조 6호에 의하면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김현철, 「대면거래에서의 전자적 본인확인제도 연구」, 『경원법학』 제4권 3호, 2001, 249면 참고.

13) 본인확인수단을 기준으로 한 통상의 분류방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류가 명확하지 않거나 복합적인 수단이 함께 적용되기도 한다.